

<참고3> 전형 단계 별 우대사항(가점) 기준 상세표

단계	대상자 및 우대 기준(가점)			비고						
서류 전형	구분	가 점	내 용	최대 10점						
	취업지원 대상자 (보훈)	5점, 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 : 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등*에 따라 만점의 5%, 10% *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· 가점부여 범위 : 관련법(국가유공자법)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제1항①(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), 제1항의②(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10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</td> <td>5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</td> </tr> <tr> <td>가점</td> <td>10점</td> <td>5점</td> </tr> </table>		구 분	10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	5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	가점	10점	5점
	구 분	10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	5%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							
	가점	10점	5점							
	장애인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							
	저소득층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해당 시·군·구청에 저소득층 등으로 등록된 자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							
	자립준비 청년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립 준비 청년으로 자립수당 수급 확인이 가능한 자 *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 종료아동 중 자립 수당 수급자 확인을 받은 자 							
	청년	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」에 따른 청년 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(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 *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, 제대군인에게는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가능 							
지역인재	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인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한 비수도권) *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, 서울·경·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 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								
한국사	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								
TOPCIT	2점, 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W역량지수(TOPCIT)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(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 * https://www.topcit.or.kr 참조 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구 분</td> <td colspan="2">정기평가 성적</td> </tr> <tr> <td>300점~399점</td> <td>400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>가점</td> <td>2점</td> <td>3점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정기평가 성적		300점~399점	400점 이상	가점	2점	3점
구 분	정기평가 성적									
	300점~399점	400점 이상								
가점	2점	3점								
면접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에 한하여 가점 부여 * 해당 항목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서류전형과 동일 			-						

※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, 법정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최종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)